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○○○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진주시

내 용

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진주역이 이전됨에 따라 진주역 주변을 다목적 복합용도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비로, 세목은 단일사업인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(공사 및 보상비)으로 편성하였다.

이에 따라, ○○○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2009. 3. 19.부터 2011. 12. 19.까지 (주)○○○○○○,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,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와 2,890백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,

○○○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를 2014. 4. 25.부터 2017. 12. 31.까지 (주)○○, (주)○○○○○○과 58,189백만원(도급 : 46,441백만원, 관급 : 11,748백만원)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.

※ 2지구 공사개요(미 발주분) : 42,978백만원(도급 : 41,604백만원, 관급 : 1,374백만원)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에 따르면,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,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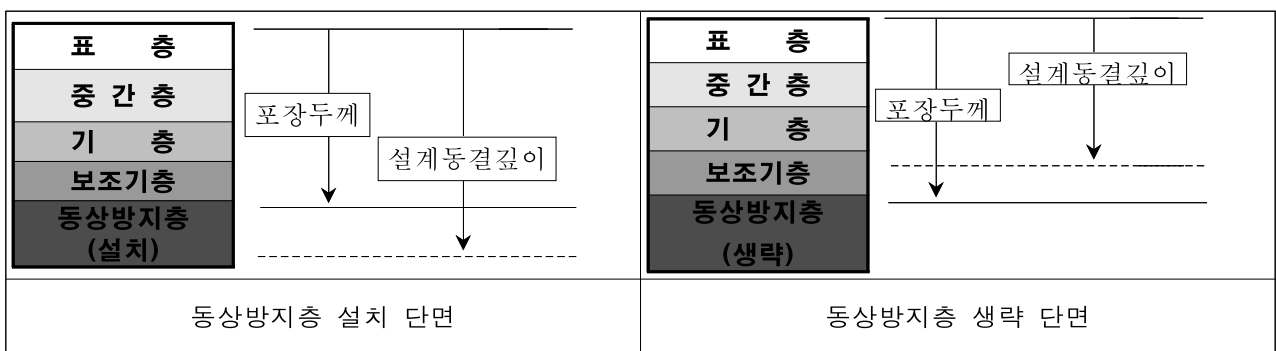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 및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67조에 따르면,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,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

또한,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,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.

「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지침」(2012. 8. 국토교통부) [별첨 1]에 따르면, “지역별 동결지수 및 동결기간 현황(최근 30년)”을 [별첨 2] “지역별 동결지수 및 동결기간 변경 현황(최근 20년)”으로 변경하여 설계 동결지수(f) 등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동 지침에 따라 설계 동결깊이⁷⁰⁾는 설계 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[그림]과 같이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클 경우에는 동상 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.

[그림] 동상방지층 포장기준 단면



그런데 진주시에서는 동사업의 1,2지구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표준발파공법을 특허발파공법(뉴텍, 에에테크, 이분위 발파공법)으로 조정 할 경우에는 652,000천원에 예산이 절감됨에도,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

70) 설계 동결깊이는 최대 동결깊이(Z)의 75%를 적용하고, 최대 동결깊이는 “ $Z=C\sqrt{f}$ ”(f:설계 동결지수, C: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)로 산정

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.

또한, ○○○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(2014. 4. 25.~ 2017. 12. 31, (주)○○외 1개사) 사업장에서 포장두께가 설계 동결깊이 보다 클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일부를 생략하여 3,051천원 상당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,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.

위와 같이 ○○○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655,000천원 상당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

발파공법 등 과다 설계된 655,000천원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